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채익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65

발의연월일: 2020. 8. 14.

발 의 자:이채익・권명호・이명수

김도읍 • 추경호 • 한무경

윤영석 · 조경태 · 김희곤

金炳旭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고,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집합 제한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개인의 인적사항, 출입국관리기록 및 위치정보 등을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음.

그런데, 코로바이러스감염증-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보공개에 따른 개인정보의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 또한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가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 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정보공개 시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이의신청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관련 규

정을 정비하고,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를 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이의 신청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고, 이의신청 결과에 대 해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4조의2).
- 나.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관리·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및 위생·건강상 태 확인 등의 방역수칙을 명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9조제1항제15호신설).
- 다.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정보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으며, 감염병 관련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3조의2 신설).
- 라. 인적사항, 출입국관리기록, 위치정보 등을 수집·이용할 때에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,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(안 제76조의2 제8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4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공개된"을 "지체 없이 공개된"으로, "하여야 한다"를 "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전단에 따른 정보를 공개할 때에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이 경우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 인에게 그 사유와 함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9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큰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·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및 위생·건강상태 확인 등의 방역수칙을 명하는 것

제11장에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3조의2(감염병정보시스템)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진료 관련 정

보를 공유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및 약국,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감염병 관련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는 감염병의 진료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.
-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염병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정보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정보의 요청·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4조 중 "비밀을"을 "비밀 또는 개인정보를"로, "누설하여서는"을 "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"으로 한다.

제76조의2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요청 또는 제공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,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78조제3호 중 "비밀을 누설한 자"를 "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3조의2 및 제76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질병관리청장에 관한 경과조치) 제34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중 "질병관리청장"은 2020년 9월 11일까지는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의2(감염병위기 시 정보공	제34조의2(감염병위기 시 정보공
개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	개) ①
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	
확산으로 인하여 「재난 및 안	
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	
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	
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	
동경로, 이동수단, 진료의료기	
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	
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	
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	
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	
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	
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	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
	전단에 따른 정보를 공개할 때
	에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제2항
	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등에
	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	③
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	
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	
는 <u>공개된</u> 정보의 정정 등 필	지체 없이 공개된

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후 단 신설>

④ (생략)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-보건복지부장관, 시 · 도지사 또 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감염 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 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~ 14. (생 략) <신 설>

② (생략) <신 설>

<u>9</u> 1/2	L
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히	<u>}</u>
여야 한다. 이 경우 이의신청을)
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	<u>}</u>
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	, <u> </u>
와 함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	<u> </u>
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항을) <u>-</u>
통지하여야 한다.	

④ (현행과 같음)

-----.

1. ~ 14. (현행과 같음)

15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큰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・운 영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출 입자 명단 작성 및 위생・건 강상태 확인 등의 방역수칙을 명하는 것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3조의2(감염병정보시스템) ①

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・ 운영할 수 있다.

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·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및 약국,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감염병 관련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는 감염병의 진료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.

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염병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 이경우 해당 정보가 「개인정보

제74조(비밀누설의 금지) 이 법에 제74조(비밀누설의 금지) ------따라 건강진단, 입원치료,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 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 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된다.

제76조의2(정보 제공 요청 및 정 보 확인 등) ① ~ ⑦ (생 략)

<u><신</u>설>

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될 수 있 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• 관리적 및 물리적 조 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감염병정보시 스템의 구축・운영 및 제2항부 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정보의 요청ㆍ제 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----비밀 또는 <u>개인정보를------</u>

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----.

제76조의2(정보 제공 요청 및 정 보 확인 등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
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정보의 요청 또는 제공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에 필요한 최소한 ⑧・⑨ (생략)

- 1. 2. (생략)
- 3. 제7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

용도로 사용한 자